

한국 고유한자 字形 構成 方法 연구 二題

-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

이 건 식*

국문초록

이 글은 중국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고유한자가 함유한 자형 형성의 고유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자형 형성의 고유성을 밝히게 되면, 한국 고유한자에 투영된 우리말 어형을 복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 고유한자 樛를 우리말 ‘뽕’ 또는 ‘보’를 차자 표기한 保에 意符 ‘木’을 추가하여 구성된 글자로 파악하였다. 둘째, 종래 樛의 의미를 ‘사다리’로 파악한 것은 오류임을 밝히고, 이를 ‘자꿇밥’으로 풀이해야 바른 것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이영훈(1980)과 남풍현(1989)을 활용하여 한국 고유한자 兪가 ‘統首’의 의미를 가지게 된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형성에 의해 구성된 한국 고유한자의 새로운 사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활용하여 한국 고유한자 ‘襍, 纒, 襪’ 등이 형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고유한자 稂가 형성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새로이 밝혔다. 稂는 ‘정부, 곡식, 창고’ 등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기원적인 의미는 ‘곡식’임을 밝혔다. 그리고 禾倉과 같은 결합 경험에서 후행한 倉창고에 영향을 받아 禾에 京창고의 意符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글자, 즉 형성자임을 밝혔다.

[주제어] 한국 고유한자, 樛, 樛, 兪, 襍, 纒, 襪, 稂

목 차

- | | |
|--|---------------------------------|
| I. 서 언 | III.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
| II.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 | IV. 결 언 |

* 단국대학교 교수 / leeksl@dankook.ac.kr

I. 서 언

中國 字書나 韻書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어떤 한자를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된 것이 중국의 失傳된 한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인 것을 한국 고유한자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이 가진 고유성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한국 고유한자에 투영된 우리말 어형을 복원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형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¹⁾로 한국 고유한자의 목록에 포함된 글자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김종훈(1992)과 한국한자어사전(1997)의 연구로 한국 고유한자의 목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고유 의미를 풀이하고, 한국 고유한자를 國字, 國義字, 國音字 정도로 분류하는 것에만 주력하였다.²⁾ 이들의 연구는 한국 고유한자 판정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된 일부는 후속 연구에 의해 한국 고유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한자어사전(1997)에서 기존에 한국 고유한자로 취급하던 것들의 상당수가 고유한자가 아닌 것으로 재규정되었다.

한편 鮎貝房之進(1931)은 한국 고유한자의 목록을 확대하면서도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合字, 象形, 諧聲, 會意, 會意 겸 諧聲, 假借 造字 등으로 한국 고유 한자의 자형 구성 유형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남풍현(1989: 109)은 한자 표기와 차자 표기가 구별되는 체계이나 오늘날 차자 표기가 사라진 점을 감안하여 차자 표기 영역에 속하는 한국 고유한자도 한자 표기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고유한자 畵를 포함하여 太, 矣 등이 合字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鮎貝房之進(1931)과 남풍현(1989: 109)의 연구처럼 한국 고유한자가 가지는 고유성에 기반하여 한국 고유한자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고유한자 襪, 纒, 襪 등이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재차 확인하고, 稊가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새로이 주장하고자 한다.

-
- 1)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에서 鄭東愈(1744~1808)가 『書永編』에서 “俗用雜字, 兩字合爲一(字)”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 43자, 李圭景(1788~1856)이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 한국 고유한자 98자, 池錫永이 『字典釋要』(1909)에서 ‘(朝)鮮(字)’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 56자, 朝鮮光文會가 편찬한 『新字典』(1915)에서 朝鮮俗字라 하여 한국 고유한자 106자에 대하여 그 의미를 풀이하였다. 한편 20세기 들어와서 근대적인 연구에서 鮎貝房之進의 『俗字考』(1931)에 이르러서는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俗字와 俗訓字의 목록이 184자로 확대되었다. 홍기문(1957)의 연구에 이어서 김종훈(1992)에서 國字 136자, 國音字 45자, 國義字 115자 등 모두 600자, 한국한자어사전(1997)에서 國字 199자, 國義 401자 모두 600자가 연구되었다. 하영삼(1999)의 연구가 있었으나 한국한자어사전(1997)의 논의를 크게 벗어 나는 것은 아니었다. 최동연(2000)은 ‘조선식 한자’라 하여 198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2) 물론 박성중(2005)의 경우는 한국 고유한자를 한자 표기와 차자 표기를 통합한 일원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전시켜 한국 고유한자를 國造字, 國義字, 國變字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된다는 발전적인 주장을 내어 놓았다.

II.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

1. 李睟光 『芝峯類說』의 文字部

李睟光의 『芝峯類說』文字部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를 풀이하고 이들이 會意의 방식으로 구성된 글자임을 말하고 있다.

- (1) a. 金時習의 『遊金鰲錄』에, "北榆寺에서 모란을 본다는 시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榆이란 글자는 韻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세속에서 나무의 속을 파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榆이라고 한다. 즉 方言에 소위 扈(扈音)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에는 水田을 畚이라 하고, 한 섬이 못 되는 곡식의 양을 漚라 하고, 묽음이 큰 땀나물을 法이라고 한다. 모두 뜻으로 만든 것이다(意作).³⁾⁴⁾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 b. 柳公祖(1522~1599)의 上疏에 말하기를, 東夷·西戎·南蠻·北狄이라고 한 글자에는 모두 뜻이 있습니다. 夷는 大弓, 즉 활이 크다는 뜻이고, 戎은 十戈, 즉 창이 열 개, 즉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며, 蠻은 짐승(虫)이 변한 것이라는 뜻이고, 狄은 개(犬)가 화(火)한 것이란 뜻입니다. 倭는 人의 道를 버림(委棄) 하였다는 뜻입니다. 활이 크대(大弓)는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공이 창조한 말인가.⁶⁾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1b)는 (1a)의 연속된 내용으로 한자 夷, 戎, 蠻, 狄, 倭 등의 의미를 회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1a)에서 말한 意作에서의 意는 會意를 말한 것이 된다. 결국 이수광은 (1a)에서 榆, 畚, 法 등의 한국 고유한자가 會意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畚의 경우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서 '水田'의 어휘가 쓰였고, 畚의 의미가 '水'와 '田'의 뜻을 모은 것과 일치하므로 한국 고유한자 畚이 會意의 방식으로 구성된 글자라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榆과 法의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서 會意로 구성된 글자인지 설명될 필요가 있으나 (1a)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3)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金時習遊金鰲錄 有北榆寺看牡丹詩 按榆字不見於韻書 今俗以剗木引水爲榆 卽方言所謂扈音也 我國用字 以水田爲畚 米穀未滿石者爲漚 柴束之大者爲法 皆意作也"

4) 여기 『芝峯類說』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 제시된 것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하의 내용도 동일하다. 『日省錄』, 『靑莊館全書』 등의 번역문도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 제시된 것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또 이하의 내용에서 제시된 『朝鮮王朝實錄』의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 제시된 것을 활용할 것임을 밝혀 둔다. 한편 『高麗史』의 경우에는 『譯註高麗史』의 번역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5) 柳祖(1522~159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6) 『芝峯類說』, 卷七, 文字部 字義, "柳公祖上疏 有曰東夷西戎南蠻北狄皆有意 夷者大弓也 戎者十戈也 蠻者虫所變也 狄者犬所化也 倭者委棄人道也 以大弓故我國人善射云 未知此言出於何處 抑公創造語耶"

2. 黃胤錫의 『頤齋亂稿』

黃胤錫(1729~1791)의 『頤齋亂稿』 1780년(정조 4) 4월 25일 기사에 ‘大豆’를 뜻하는 한국 고유한자 太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⁷⁾이 있어 주목 된다.

- (2) a. 豆字는 옛날 중국어이고 음은 ‘타’이다. 지금은 太 음으로 변해서 大豆를 太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大[太]란 것은 大豆의 두 글자가 줄어든 것이다. 大[太]字의 아래 一點은 大豆의 형상이다. 一點이 大에 첨가되어 太字를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⁸⁾ <頤齋亂稿, 권32, 1780년(정조 4) 4월 25일>
- b. 太는 黃豆를 속칭으로 太라 한다. 대개 黃豆는 콩 가운데에서 큰 것이므로 大字의 아래에 콩의 모양을 본 뜬 점을 붙인 것이다.⁹⁾ <震覽 行用吏文>

黃胤錫은 (2a)에서 한국 고유한자 太의 자형 구성 방법에 관한 두 가지 설을 진술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에 널리 유포된 속설이다.

太가 豆의 변화된 음을 표기한 것이라는 黃胤錫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大豆의 ‘大’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太의 자획에 있는 ‘점’획은 콩의 형상을 본뜨되 생략하여 표기한 것이라는 당시의 속설은 (2b)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속설은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남풍현(1989: 98-99)은 太의 점이 콩을 象形한 것이라는 견해는 후대인이 부회한 속설로 파악하면서, 일본 正創院에 보존된 第二新羅文書에 나오는 大豆의 豆가 之자 처럼 쓰인 것을 근거로 太는 大豆가 合字가 된 것이며 太의 점은 豆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太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남풍현(1989)의 견해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之’의 획이 ‘·’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다른 전거¹⁰⁾가 확보된다면 남풍현(1989)의 견해는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

3.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盎葉記」

『靑莊館全書』 「盎葉記」에도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 방법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 주목 된다.

- 7) 비슷한 내용의 기술이 黃胤錫의 『頤齋遺藁』 卷之二十五 雜著 華音方言字義解에 실려 있다. 내용 작성일이 밝혀진 『頤齋亂稿』의 내용을 활용한다.
- 8) 『頤齋亂稿』 권32, 1780년(정조 4) 4월 25, “豆字 古華語 有口音 而今轉太音 故呼大豆爲太 或曰 大者 大豆二字之省也 大字 下一點 大豆之形 而因以一點 並於大成太字云”
- 9) 『震覽』, 行用吏文, “太 太俗稱黃豆爲太 蓋黃豆 豆之大者 故於大字下着一點如豆形 象以省文 ○콩 大豆古無此字”
- 10) ‘之’가 ‘·’로 변형되는 보충적인 자료는 최근 복원이 완료된 고려 시대(11세기) 『釋迦塔墨書紙片』에서 찾을 수 있다. 『釋迦塔墨書紙片』의 68과 73에는 大豆와 小豆가 표기되었는데, 大와 小 아래 豆가 흘러쓴 형태로 기입되어 있다. 豆의 ‘一’과 ‘口’의 획이 흘러 써져 ‘ㄱ’의 형태로 기입되어 있고 ‘ㄴ’은 ‘之’의 형태로 기입되어 있다. 『釋迦塔墨書紙片』은 11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第二新羅文書』와 『釋迦塔 墨書紙片』에 大豆가 쓰여진 형태를 비교해 보면, 『第二新羅文書』의 豆는 ‘ㄴ’ 획만을 ‘之’ 형태로 쓴 것이어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생획의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韻會[黃公紹가 지었다]에, 楸의 음은 伏인데, 들보[梁楸]이다. 하였고, 正字通[張自烈이 지었다]에, 작은 나무를 큰 나무 위에 덧붙이는 것이 楸이라고 하였고, 舊唐書 裴延齡傳에, 德宗이 연령에게 浴堂院殿(욕당은 宮禁 안에 있는 욕실)의 楸 한 개가 좀[蠹]에 상한 것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廳事의 대들보를 輔木이라 하니, 이 楸을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중국에서 쓰이는 어휘를 써 오면서도 지금 사람들에게 楸자를 보이면 도리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¹¹⁾ <靑莊館全書 卷之六十 蟲葉記 七 楸>

이덕무는 (3)에서 우리 말 輔木[보목 또는 보나무]이 한어 楸[들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덕무의 이러한 진술은 비록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들보’를 뜻하는 한국 고유한자 楸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 「동국토속자변증설」에서 (3)을 인용하여 한국 고유한자 楸를 설명한 것¹²⁾이 그러한 증거가 된다.

輔木은 조선 후기 관문서 자료에서 保木으로도 표기된다.¹³⁾ 이는 輔木의 輔는 음차자로 우리 말 ‘보’ 정도를 표기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輔[보]의 의미가 ‘들보’이므로 이 輔[보]를 15세기어에서 ‘들보’를 의미하는 ‘봉¹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한어 楸의 음이 ‘복’ 정도인 ‘伏’이라는 점에서, 또 이기문(1998: 88)이 말한 것처럼 봉(楸)도 ‘송(俗), 송(禱), 덩(笛), 봉(襖), 장(尺) 등과 동귀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근거로 15세기어 우리말 ‘봉’는 한어 楸에서 오래 전에 차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어 楸에서 차용된 15세기어 ‘봉’는 ‘복’봉’보’ 라는 음의 변화를 보여 주고, 15세기에 한글로 표기된 점에서 우리 말에 완전히 정착된 차용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한자 楸를 ‘봉’ 또는 ‘보’를 차자 표기한 保에 意符 ‘木’을 추가하여 형성의 방식으로 구성된 글자로 파악할 수 있다. 즉 鮎貝房之進(1931)이 말했듯이 우리말 ‘엄나무’의 ‘엄’을 嚴으로 차자 표기 하고, 이것에 意符 ‘木’을 추가하여 구성된 櫟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鮎貝房之進(1931: 214)이 楸를 형성에 의한 한국 고유한자라 하였으나 鮎貝房之進(1931)은 櫟負商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4. 鮎貝房之進의 『俗字考』

鮎貝房之進(1931)에서 俗字라 하여 149자, 俗訓字라 하여 35자, 모두 184자의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俗字에 대하여는 그 구성 방법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鮎貝房之

11) 『靑莊館全書』卷之六十 蟲葉記七 楸, “韻會 黃公紹撰 楸音伏 梁楸也 正字通 張自烈撰 以小木附大木上 爲楸 舊唐書裴延齡傳 德宗謂延齡曰 浴堂院殿 一楸似有損蠹 我國以廳事大樑 爲輔木 蓋楸也 寀從華語 而今示人楸字 反茫然不省”

12)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토속자변증설」, 楸, “【音保 梁也 見《戶曹定例》即楸字之譌 黃公紹《韻會》楸 音伏 梁楸也 張自烈《正字通》以小木附大木上爲楸(舊唐書·裴延齡傳) 德宗謂延齡曰 浴堂院殿一楸 似有損蠹 是也 我東以廳事大樑爲輔木 蓋楸也 實從華語 而今示人楸字 爲正而無人知之 誰能強辨”

13) 예컨대 장서각 소장의 『御營廳曆錄(K2-3349)』 권55 甲戌九月初一일의 기사에 나오는 ‘兵曹保木一百同’을 들 수 있다.

14) ‘보물리/梁棟 <법화경언해 2:56>, 마륵와 보과 서와 길괘/棟梁椽柱 <법화경언해 2:124>’ 등의 예에서 梁을 뜻하는 ‘보’ 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櫪의 의미를 木梯로 풀이하였는데, 이를 오독하여 木梯로 파악하면서 櫪의 의미를 ‘사다리’로 파악하는 오류¹⁷⁾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김종훈(1992), 한국한자어사전(1997), 하영삼(1999) 등에서도 답습되어 있다.

이규경은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 櫪를 ‘木材’로 풀이하고 있다. 조선 후기 官文書에는 ‘櫪木 二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二同’의 同은 일정한 단위¹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櫪의 의미가 ‘사다리’일 수는 없다. 조선 후기 관문서에서 ‘飛木’이 쓰이고, 이 ‘飛木’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꿇밥’으로 풀이한 것¹⁹⁾에 기대면 櫪는 ‘飛木’의 ‘飛’에 木符를 추가하여 구성된 글자로 이해되어 그 의미는 ‘자꿇밥’ 또는 ‘대패밥’ 정도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櫪는 형성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4f)의 假借 造字 유형은 재론의 여지 없이 논거가 명확한 것이다. 한편 (4g)의 俗(體)字 유형은 과연 한국 고유의 생획형인지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鮎貝房之進(1931)의 연구로 한국고유한자의 목록이 『신자전』의 106자에서 184자로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鮎貝房之進(1931)은 일부의 한국 고유한자에 대해서는 한국 고유한자가 가지는 고유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鮎貝房之進(1931)이 제시했던 한국 고유한자 중 일부는 후일의 연구인 한국한자어사전(1997)에서 한자로 수정되었다. 대표적으로 礮, 龕, 鯨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한자어사전(1997)에 의해 礮, 龕, 鯨 등이 중국 문헌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 남풍현(1989)의 습字에 의한 한국고유한자 논의

남풍현(1989: 98-101)은 다음과 같이 신라 시대와 통일 신라시대에 습字된 한국 고유한자를 기술하고 있다.

- (5) a. [大/舍](大舍), [小/舍](小舍) [上/干](上干) [一/伐](一伐), [一/尺](一尺), [大/鳥](大鳥) [小/鳥](小鳥) [上/人](上人) 〈南山新城碑(591)〉
- b. [大/舍](大舍)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
- c. 朶(乃未), 奕(功夫) 〈永川善堤碑貞元銘(798)〉
- d. 柰(大等) 柰(大末) 〈興法寺眞空大師塔碑陰記(940)〉
- e. 柰(大等) 柰(大末) 〈龍頭寺幢竿記(962)〉

(5)는 2자로 구성된 신라 관직명이 합자된 예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한국 고유한자는 鮎貝房之進(1931)에

17) 鮎貝房之進(1931: 192)의 이같은 오류는 木梯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 『新字典』에 ‘櫪 木梯 사다리’으로 기술된 오류를 답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韓國漢字語辭典(1997)에서 同을 “피륙 50필, 나무토막 100개, 먹 10자루, 붓 10자루, 벧집, 약초, 풀 1백단, 물고기 1천마리 또는 2천마리, 미역 2500 오리, 새끼 1500 발, 공지깃 100개” 등의 단위로 설명하고 있다.
 19) 『표준국어대사전』, 비목01(飛木), “비목만-몽-ㄷ 「명사」=자꿇밥.”

서 일부 논의되었지만 남풍현(1989: 98-101)에서 그 목록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남풍현(1989: 98-101)은 특히 𡗗의 木은 等의 생획자로 정자와 생획자가 합자된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大/畝]의 경우는 2자로 합자되면서 ‘畝’의 ‘丿’ 획이 생획됨을 강조하고 있다.

(5)에 제시된 합자의 한국 고유한 사례에 근거하여 남풍현(1989)은 畝, 太, 矣 등의 한국 고유한자가 畝字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임을 언급하면서, 이 글자의 구성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남풍현(1989)이 제시한 太의 자형 구성 방법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矣가 畝字에 의해 구성된 글자임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한다.

남풍현(1989)이 矣를 합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鮎貝房之進(1931: 58-60)의 ‘상형’ 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鮎貝房之進(1931: 58-60)은 다음 자료 (6a)에 근거하여 矣를 상형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일 가능성을 제안했다.

- (6) a. 矣 凡民名作夫時?²⁰⁾以筆勾圈, 故俗因取以苧비爲矣字从厶从 取象形如太字例 (輯覽吏文補 稻葉君藏 寫本單)
- b. 矣. 주비 ○ 官物을 거두고 나누어 줄 때의 統首를 말하는 것이다. 백성의 이름을 作夫할한 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일²¹⁾ 때에 𡗗으로 勾圈을 표시한다. 그런 까닭에 그 모양을 본떠 ‘주비’로 矣라 한다. 마땅히 厶를 따르고 夫를 따라야 한다.²²⁾ (震覽 行用吏文)

(6a)의 내용을 기록한 稻葉君藏 寫本の 『輯覽吏文補』는 현재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다.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6b)의 내용을 가지고 矣를 象形字로 파악하는 鮎貝房之進(1931: 58-60) 견해의 문제를 들어보기로 한다.

(6b)의 내용으로 ‘주비’를 뜻하는 矣가 勾圈인 厶 또는 ○ 정도의 부호가 夫자 위에 찍혀 矣의 자형이 형성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도 (6a)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조선 시대 八結作夫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矣(주비)가 統首의 뜻을 가지게 된 경위와 矣가 무엇을 상형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鮎貝房之進(1931: 58-60)은 조선 시대 八結作夫 제도에 대한 진술없이 (6a)의 ‘取象形如太字例’를 근거로 矣가 象形字일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矣에 대한 설명이 (6a)보다는 (6b)가 체계적이지만 (6b)조차도 矣의 자형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다. 남풍현(1989)은 矣의 자형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자료를 인용하여 矣가 합자에 의해 형성된 자형임을 논의하였다.

- (7) 또 結夫의 夫는 夫字의 위에 圈으로 표시하였다. 드디어 夫가 圈에 이어져서 矣가 되었다. 속칭

20) 원문에 ?으로 되어 있다.

21) 『표준국어대사전』, 作夫, 「명사」 『역사』,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인 일. 또는 그 징세 책임을 지던 사람.”

22) 『震覽』 行用吏文, 矣, “주비 ○ 官物歛散之時, 統首謂之矣. 民名作夫時, 輒以筆勾圈, 故取其象形, 以苧비爲矣 當从厶从夫”

하여 注非(주비) 矣라고 한다.²³⁾ 〈萬機要覽 財用編二 田結 田制〉

(7)은 ‘주비’를 뜻하는 ‘矣’의 자형 구성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圈標인 ○와 夫가 이어져서 矣의 자형이 형성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와 夫가 합자된 矣가 어떻게 15세기어에서 ‘떼’ 또는 ‘무리’의 뜻을 가진 ‘주비’와 연관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영훈(1980: 80-88)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이영훈(1980: 80-88)은 조선 후기 八結 作夫制를 검토하면서 作夫의 夫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8) a. 夫란 여러 片의 田土를 모아 8결로 만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러 납세자를 조직한 것으로 하나의 인적 조직(주비)이었던 것이다.
- b. 夫라는 납세주의 주비를 만들고 戶首로 하여금 結稅를 수납케 한 제도가 作夫制, 八結作夫制, 혹은 八結戶首制인 것이다. 지방에 따라 作夫는 作矣, 作結 혹은 結戶, 束戶, 打戶 등 다양하게 불리었다.

(8a)는 여러 납세자를 일정한 규모로 조직한 것이 夫임을 설명하고 있다. 夫는 경우에 따라서 4결을 기준으로 하거나²⁴⁾ 8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가²⁵⁾ 있다. 矣를 구성한 夫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고유한자 矣에 ‘떼’ 또는 ‘무리’의 의미를 갖는 ‘주비’가 연결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8b)는 여러 납세자를 일정한 규모로 조직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곧 소유한 전도가 적어 세액이 적은 납세자를 일일이 상대하기 보다는 그 대표자만을 상대하여 結稅를 거둬 들이겠다는 것이다. (8b)로 우리는 ‘떼’ 또는 ‘무리’의 의미를 갖는 중세어 ‘주비’가 8結 경제 조직의 統首 또는 戶首를 지칭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서 圈點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선발²⁶⁾한 경우에, 圈點 ○의 의미는 ‘선택’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한자 矣를 형성한 圈點○도 ‘선택’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夫’로 구성된 矣의 의미는 8結로 묶인 여러 夫납세자 가운데에서 대표로 ‘선택’된 夫를 뜻한다고 하겠다. 1883년에 작성된 장서각 소장인 『昌陵位田畝量案』 권1의 다음 자료는 이를 증거하고 있다.

- (9) a. 第三 北犯 五等句畝(十八夜味 長七十二尺 活三十八尺 五卜五束二方同位田 南走非畝 北已日畝) 〈昌陵位田畝量案 권1 深字〉

23) 『黃胤錫』, 財用編二, 田結, 田制, “又如結夫之夫 加圈以標之於夫字之上 遂以夫連圈 爲矣〔俗稱注非矣〕”
 24) 『承政院日記』 1807년(순조 7) 5월 29일, “而每四結作一夫, 名之曰注非, 注非, 卽其中結卜稍多者也 結內各樣稅納 專責於注非 爲注非者 計卜收捧於結內諸人 以應一年惟正之供 則源其設施”
 25) 『肅宗實錄』 1684년(숙종 10) 8월 20일, “作夫【俗以一八結 爲一夫云】之時”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圈點, “추천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천대상자들의 명단 위에 각기 권점(○표)을 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소정의 점수에 이른 사람을 이조에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던 예비선거제도였다.”

- b. 第四 西犯 六等直田(長十五尺廣八尺) 三束(東同位畝 南走非畝 二方路) 〈昌陵位田畝量案²⁷⁾ 권1 深字〉

(9a)와 (9b)의 南走非畝가 주목된다. 이 표현은 深字 第三 北犯 五等句畝와 深字 第四 西犯 六等 直田의 남쪽 경계는 走非畝의 논임을 말한 것이다. 深字 第三의 논과 深字 第四의 논이 作人이 자신들의 대표를 走非畝라 한 것이다.

Ⅲ.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1. 襜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襜을 한국한자어사전(1997)에서 國字로 규정하고 있다. 襜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9) a. 飛襜其十四五歲四字 〈中宗實錄 1530(중종 25) 5월 4일〉, 而置簿冊皆飛襜改書 〈明宗實錄 1547년(명종 2) 7월 5일〉
 b. 襜襜其妻家文書, 有同姦吏之爲 〈宣祖實錄 1574년(선조 7) 2월 13일〉

(9a)의 飛襜는 중세어형 ‘비비-’를 음차 표기한 것이다. 이는 한국한자어사전(1997)에도 설명되어 있다. ‘飛襜其十四五歲四字’는 VO 구성의 한문 구성인데, 이러한 구성에서 우리말 동사가 음차 표기된 것은 그동안 논의된 바 없는 특이한 것이다. ‘飛襜其十四五歲四字’는 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문서에 씌여진)十四五歲의 四 글자를 비비다’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9b)의 襜襜도 우리말 ‘비비-’를 음차 표기한 것으로 (19a)의 飛襜와 동일하게 ‘위조하기 위하여 (문서를) 비비다’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襜襜에서 襜의 意符 衣는 襜의 衣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襜의 意符 衣에 영향을 받아 飛에 意符 衣가 첨가되어 襜의 자형이 형성된 것이다. 즉 襜는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된다.

2. 縹

한국 고유한자 縹는 鮎貝房之進(1931)에서는 形聲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는 鮎貝房之進(1931)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고자 한다.

김중훈(1992)과 한국한자어사전(1997)에서는 단순히 國字로만 규정하였다. 縹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27) 『昌陵位田畝量案(K2-3245)』는 장서각 소장 자료이다.

- (10) a. 脫舊着白紵縷飛袷衣〈承政院日記 1720년(숙종 46년) 6월 8일〉
- b. 而縷非長衣二件四幅〈承政院日記 1701년(숙종 27) 10월 3일〉
- c. 二百兩, 縷縷工錢 〈宣堂下記〉

(10)의 縷飛, 縷非, 縷縷 등은 우리말 ‘누비-’ 정도를 음차 표기한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한국 고유한자 襪과 마찬가지로 縷縷에서 縷의 意符 糸는 縷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縷의 意符 糸에 영향을 받아 飛에 意符 糸가 첨가되어 縷의 자형이 형성된 것이다. 즉 縷는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된다.

3. 襪

지금까지의 한국 고유한자 관련 연구에서 모두 襪을 한국 고유한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襪을 國字로 규정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 다만 鮎貝房之進(1931: 264)은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국 고유한자 襪을 衣와 對의 합자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 (10) a. 肅宗 (중략) 九年 四月 遼主賜衣對 〈高麗史 志26 輿服〉
- b. 尙衣院 (중략) 掌御衣襪 〈新增東國輿地勝覽 京都 下文職公署 尙衣院〉

襪이 衣와 對가 합자된 것이라면, 衣가 없이 襪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문헌 자료에서는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衣’를 동반하고 있다. 즉 襪은 水와 田이 합자된 畚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鮎貝房之進(1931)은 衣對의 對를 ‘(옷)감’으로 파악하여 襪을 ‘御衣資料’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동유가 『주영편』에서 ‘임금의 의복을 바치는 것을 衣襪라 말한다²⁸⁾’라고 한 것이 衣襪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鮎貝房之進(1931)이 衣對의 對를 ‘옷감’으로 파악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고려사』에는 ‘御衣二對’와 같은 표현²⁹⁾도 보인다. ‘御衣二對’는 ‘御衣 2벌’의 뜻이다. 對는 “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³⁰⁾”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衣對란 ‘옷 한 벌’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한국 고유한자 襪가 사용된 衣襪 역시 ‘의복’을 뜻한다.

한국 고유한자가 사용된 어휘로 衣襪와 東衣襪가 있는데, 이 어휘에 특수 의미가 보존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衣襪는 ‘임금의 옷’을 지칭하고³¹⁾, 東衣襪는 ‘궁중에서 저고리나 조끼’를 지칭하는데³²⁾ 衣對에 없었던

28) 정동유, 『주영편』, “上御衣服稱衣襪”

29) 『高麗史』 권14 睿宗3 乙丑, “省所差人進奉御衣二對等事具悉”

30) 『표준국어대사전』, 대12(對), “(생략) [Ⅱ] 「의존명사」 「1」 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

31) 『표준국어대사전』, 의대02(衣襪), “임금의 옷을 이르던 말”

32) 『표준국어대사전』, 동-의대(-衣襪) “궁중에서, ‘저고리01’나 ‘조끼01’를 이르던 말.”

‘임금’이나 ‘궁중’의 의미가 衣衾에 보존되어 있다.

『고려사』에 衣對뿐만 아니라 衣衾의 衾를 이체자 示對로 표기한 衣示對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 (11) a. 이제 閣門通事舍人 徐亶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宣諭케 하고 너에게 衣對 綵段 銀器를 하사하고³³⁾ 〈高麗史 文宗 1년 9월 己酉〉
- b. 왕이 乾德殿에 거동하여 引見하고 近臣에게 命하여 (東京)留守의 安否를 묻고 酒食과 衣對를 하사하였다.³⁴⁾ 〈高麗史 獻宗 元年 5월 癸丑〉
- (12) a. 知京山府事 殿中內給事 李成美가 새로 판각하여 만든 隋書 680板을 올리니 詔하여 祕閣에 두게 하고 각기 衣示對을 하사하였다.³⁵⁾ 〈高麗史 文宗 12년 2월 甲戌〉
- b. 우리 태조가 與神德王와 함께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왕이 태조에게 衣示對, 갓 보배로 장식한 갓끈, 안장 갓끈 말을 하사하였다.³⁶⁾ 〈高麗史 恭讓王 3년 7월 己亥〉
- c. 7월 己卯에 都堂이 禍의 생일이므로 三司左使 趙仁璧과 同知密直 具成老를 江華에 보내어 衣示對을 진상했다.³⁷⁾ 〈高麗史 列傳 辛禍〉

(11)은 衣對의 용례이고 (12)는 衣示對의 용례이다. 모두 ‘의복’의 뜻을 가졌다. 그런데 (11)의 모든 용례와 (12a), (12b) 등의 衣對와 衣示對가 ‘임금이 하사하다(賜)’와 관계되고, (12c)의 衣示對는 ‘임금께 진상하다(獻)’와 관계된 점이 주목된다.

조선 전기 『朝鮮王朝實錄』에는 衣對와 衣衾로 나타난다. 『高麗史』와 마찬가지로 衣對와 衣衾는 ‘왕’ 또는 ‘궁궐’과 관련된 용법으로만 발견된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서 衣對와 衣衾가 사용되는 문맥은 ‘왕이 신하에게 하사했다’, ‘신하가 왕께 진상했다’ 등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중궁전이나 동궁전의 ‘의복’을 지칭하는 경우만 발견된다. 衣對의복 또는 衣 二衾(옷 2벌) 등이 일상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 고유한자 衾의 자형 형성 과정과 의미를 정리하기로 한다. 衣對의 對는 본래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로 衣對는 ‘1벌의 의복 일체’를 의미하던 것이었다. ‘1벌의 의복 일체’의 의미를 ‘衣一對’로 표현하지 않고, ‘衣對’로 표현하게 되므로써,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 對가 ‘衣’에 영향을 받아 衾의 자형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衾는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파악된다.

그리고 衣對와 衣衾가 왕과 관련된 문맥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한국 고유한자 衾가 ‘임금’의 의미를 흡수하여 衾가 ‘임금의 의복’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동유가 『주영편』에서 ‘임금의 의복을 바치는 것을 衣衾라 말한다’는 풀이는 衣衾가 이것과 결합된 동사 즉 上, 憲 등의 의미까지도 흡수했음을 보여 준다.

33) 今差閣門通事舍人徐亶往彼宣諭賜爾衣對綵段銀器 #高麗史7卷-世家7-文宗1 九月己酉

34) 〈高麗史 元年 5월 癸丑〉 王御乾德殿引見命近臣問留守安否賜酒食衣對

35) 〈高麗史 文宗 12年 二月 甲戌〉 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美進新雕隋書六百八十板詔置祕閣各賜衣示對

36) 〈高麗史 恭讓王 3년 7월 己亥〉 我太祖與神德王后享王賜太祖衣衾笠子寶纓鞍馬

37) 〈高麗史 列傳 辛禍〉 七月己卯都堂以禍生日遣三司左使趙仁璧同知密直具成老于江華獻衣衾

4. 稂

稂의 자형 형성 경위와 특수 의미 획득 방식은 한국 고유한자 稂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稂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몇 가지로 나누어 稂가 가진 특질을 분석하도록 한다.

(1) 稂에 대한 기존 해석의 비판적 검토

문헌 자료에서 한국 고유한자 稂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3) a. 창고를 稂이라 칭한다. 음은 ‘수’이다³⁸⁾ 《晝永篇 下》
- b. 稂倉 살펴보면 稂은 음이 漑[수]이고 字書에 보이지 않는다. 본국의 畚과 頤 二字와 같다. 대개 稂倉은 戶曹 賑恤廳 常平廳 三司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무릇 祭享, 진홀, 인부·쇄마의 비용이 다 이 창고에서 나온다. ³⁹⁾ 《南漢志》
- (14) a. 稂 [음은 漑수]이다. 각 궁방에는 稂宮의 직임이 있다. 또 창고의 이름이다. 廣州牧에 稂倉이 있다.⁴⁰⁾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⁴¹⁾》
- b. 奄人과 稂宮[稂은 음이 肅수]이다. 俗字이다⁴²⁾ 《牧民心書 卷三 貢納》
- c. 稂宮 [쉬궁 ○ 궁방 員役⁴³⁾의 이름이다.]⁴⁴⁾ 《震覽 行用吏文》
- d. 稂 조선자이다. 各宮의 幹事者가 稂宮이다. ‘숙궁숙’이다.⁴⁵⁾ 《字典釋要 稂》
- e. 稂 [숙] 각궁 소임. 궁소임. 또 창고 이름이다. 광주목에 稂倉이 있다.⁴⁶⁾ 《新字典》

(13)은 稂이 ‘창고’의 의미를 가졌고, 이 경우 음이 ‘수’임을 말하고 있다. (14)는 稂宮에 나타난 稂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4c)는 稂宮의 稂가 그 음이 ‘쉬’임을 말하고 있으나 (14)의 나머지 것들에서는 稂宮에 사용된 稂의 음이 ‘숙’임을 말하고 있다. 한편 (14a), (14c), (14e)는 稂宮의 의미를 구체성 없이 ‘궁방의 직임’ 또는 ‘궁소임’으로만 풀이하고 있다. (14d)는 稂宮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궁방의 幹事者’로 풀이하였으나 이것 역시 추상적이긴 마찬가지이다. 幹事와 稂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아 (14d) 역시 추상적인 풀이로 생각된다.

鮎貝房之進(1931: 179-180)은 (13a)와 (13b)에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稂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8) 『晝永篇』 下, “倉庫稱稂(音수)”

39) 『南漢志』, “稂倉 按稂音漑 不見字書 猶本國之畚頤二字也 蓋稂倉卽戶曹賑恤廳常平廳三司各穀所儲庫也 凡諸祭享之需 賑濟之資 夫刷之價 皆出於此庫”

40)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稂 [音수] 各宮有稂宮之任 又倉名 廣州牧有稂倉 (생략)”

41) 『新字典』 朝鮮俗字部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즉 ‘稂 [숙] 各宮所任궁소임 又倉名廣州牧有稂倉’이다.

42) 『牧民心書』 卷三 貢納 “奄人稂宮[稂音肅俗字也]”

43) 『표준국어대사전』, 원역01(員役),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구실아치.”

44) 『震覽』 行用吏文, “稂宮 [쉬궁 ○ 宮房員役之名]”

45) 『字典釋要』, 稂, “[肅] 各宮幹事者稂宮 숙궁숙”

46) 『新字典』 朝鮮俗字部, “稂 [숙] 各宮所任궁소임 又倉名廣州牧有稂倉”

- (15) a. [庫秤雇役侵欺凡倉庫務場局院庫秤斗級若雇役之人(原文) / 凡諸倉庫局院等司稂公斗人使令人等亦(譯文) <大明律直解 太祖四年頒行>
 b. 倉稂部曲[在府西三十里] <新增東國輿地勝覽 寧海都護府 古蹟>
 c. 慈殿稂奴 <文獻備考 刑考>

鮎貝房之進(1931: 179-180)은 稂를 회의자로 규정하고 稂의 의미를 ‘京穀’, 정확하게는 ‘서울(정부)의 곡식 창고’로 풀이하고 있다. 鮎貝房之進(1931)은 앞의 (13a)로 ‘창고’의 의미를, (13b)로 ‘곡식’의 의미를 도출한 듯하다. 그리고 稂가 私家의 창고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稂의 의미를 서울 즉 ‘정부의 창고’로 이해한 듯 하다. 그리고 ‘稂宮’에 대해 ‘궁(방)의 회계를 처리하고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는 속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 (16) a. ‘창고’를 뜻하는 稂과 ‘궁방의 직임’을 뜻하는 稂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b. 稂宮의 의미를 ‘궁방의 직임’으로 이해할 때, 稂宮의 稂는 과연 ‘직임’의 뜻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稂宮의 宮은 과연 宮房의 뜻을 가진 것인가?
 c. 稂宮을 ‘쉬궁’이라 하고 ‘숙궁’이라 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2) 稂宮의 기원과 의미 해독

(16)에서 제기된 의문점은 稂宮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⁴⁷⁾ 『대명률직해』 이두문에 나오는 ‘司稂公斗人’을 『吏讀略解』에서 ‘司稂’과 ‘公斗人’으로 이해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면서 稂宮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해독하기로 한다.

- (17) a. 凡倉庫務場 局院 庫秤 斗級 若雇役之人 <大明律直解 7:7b>
 b. 凡諸倉庫 局院等 司稂公 斗人 使令人 等亦 <大明律直解 7:7b>

(17a)는 『대명률직해』의 원문이고, (17b)는 원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한어 斗級은 『대명률직해』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말 斗尺(1:43b, 7:8a, 7:8b, 7:9a)에 대응한다. 斗尺의 尺은 사람을 나타내는 ‘자이’를 표시한 것이므로 (17a)의 斗級은 (17b)의 斗人에 대응된다. 그렇다면 (17a)의 한어 庫秤과 (17b)의 우리말 ‘司稂公’이 대응된다. ‘司’는 ‘일을 관장한다’의 뜻이다. 庫秤과 稂公이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稂公이 비록 고려 시대의 2차 자료이지만 『大安寺形止案』에서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47) 이것은 『吏讀略解』와 鮎貝房之進(1931: 180)에서 稂宮의 의미 해석과 관련된 속설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稂宮은 『대명률직해』에 나오는 稂公과 관련이 있다는 속설을 『이두약해』에서 무시했고, 稂宮의 의미는 ‘궁(방)의 회계를 처리하고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는 속설을 鮎貝房之進(1931: 180)이 소개하면서도 稂宮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稂이 단독으로 쓰인 것의 의미만 京穀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18) 稂公房梗 4間 〈大安寺形止案〉

(18)의 稂公房梗에서 房은 ‘장소’의 뜻으로 흔히 쓰이며, 梗은 ‘집 채, 안 채’ 등의 ‘채’⁴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公’인데, 『대명률직해』의 稂公을 고려하여 稂公房梗을 稂公+房+梗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명률직해』의 庫秤과 稂公의 대응에서 稂이 ‘곡식 창고’의 뜻을 가지므로 庫와 稂을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秤과 公이 대응된다. 秤은 稱[저울]의 이체자이다. 따라서 秤과 公은 의미 상 일맥상통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公을 『吏學指南』吏員 조에 말하는 公人을 들 수 있다. 『吏學指南』에서 公人이란 창고의 곡식을 수납하는 관리로 풀이하고⁴⁹⁾ 있다. 稂과 公의 의미가 적절하게 어울리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稂公이란 ‘창고의 곡식을 수납하는 것을 관장하는 일이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뜻으로 이해된다.⁵⁰⁾ 곳간의 곡식 수납을 관장하는 사람인 ‘稂公’은 오늘날의 용어로 이해한다면, 어떤 조직의 회계 담당자일 것이다. 한어 庫秤의 秤을 고려할 때, 『한국한자어사전』에서 司稂만으로 ‘곡창의 일을 맡아보는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으로 풀이한 것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지기’로 풀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는 稂宮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여 稂宮과 稂公의 관련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稂宮의 의미를 ‘宮房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이 풀이에는 구체성이 없다. 문헌 자료에서 稂宮이 사용된 용례를 통하여 稂宮이 가지는 의미를 추출하도록 한다.

- (19) a. 龍洞宮 小次知 尹興莘에게는 帖加를 작성해 주고, 掌務 2인, 稂宮 1인, 서원 3인에게는 각각 목 2필을 주며, 고지기 1명에게는 목 1필과 포 1필을 주고, 대청지기노[大廳直奴] 2명, 色掌奴 6명, 入役奴 27명, 여종 15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미 2말을 주며, 청지기노[廳直奴] 3명에게는 각각 포 1필을 주었다.⁵¹⁾ 〈日省錄 1793년(정조 17) 3월 7일〉

b. 載寧啓下節目⁵²⁾

明禮宮上
啓下節目 甲午三月 日
(전략)
吳奉秋三斗落內二斗落 白(手決)
李上己三升落內二升落 白(手決)
已上元落種一百五十三石十二斗四升

48) 梗은 1401년(태종 1)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太祖家屋許與文記에도 ‘身梗 二間’으로 나온다. ‘身梗 二間’을 노명호 외 (2000: 140)에서 ‘몸채 두 칸’으로 풀이하고 있다.

49) 『吏學之南』卷之一 吏員, “公人謂倉庫秤掙[稱] 諸司祗候·公使·禁卒之類”

50) 稂公房에 대해서 박혜범(2009: 88)은 ‘궁중의 사무를 맡은 관리가 거처하는 집’으로 풀이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박약한 것이다.

51) 『日省錄』1793년(정조 17) 3월 7일, “龍洞宮 小次知 尹興莘 帖加 掌務 二人 稂宮 一人 書員 三人 各木二疋 庫直 一名 木一疋 布一疋 大廳直奴 二名 色掌奴 六名 入役奴 二十七名 婢子 十五名 各木一疋米二斗 廳直奴 三名 各布一疋”

52) 『고문서』 14책 (奎18288의23)

減種實落一百一石十一斗五升一合
 載寧官 (押)
 乾隆三十九年三月 日 明禮宮稼宮前同知李 (押)
 一千五百二十六石八斗內
 執綱四十石
 (중략)
 (載寧郡守之印 九七個處)

(19a)는 龍洞宮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의 職名을 보여 주고 있다. 稼宮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1인인데, (19a)만으로는 稼宮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19b)는 稼宮의 직무가 宮房田을 관리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19b)의 『載寧啓下節目』은 載寧郡에 소재한 명례궁 田畝의 소출 내역을 明禮宮에 보고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에 재령 군수와 明禮宮 稼宮이 함께 押싸인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稼宮은 明禮宮 소유 田畝를 관리하여 그 소출을 수납하는 직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稼宮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조직의 회계 담당자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로 우리는 고려 시대의 稼公과 조선 시대의 稼宮이 같은 의미를 가졌음을 이해하였다. 稼宮이 稼公에서 기원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稼公과 稼宮의 발음 차이를 해명해야 한다. 稼公은 ‘수공’ 또는 ‘수궁’ 정도로 읽히나 稼宮은 왜 ‘숙궁’으로 읽히는가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국어의 표기법이 ‘뿌그로’와 같은 연철 표기에서 ‘팍그로’와 같은 혼철 표기의 단계를 거쳐 ‘팍으로’와 같은 분철 표기로 변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혼철 표기인 ‘팍그로’가 나타나는 이유는 연철 표기인 ‘뿌그로’에서 제1음절에 ‘ㄱ’이 받음되었을 것이라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숙궁’은 ‘수궁’의 혼철 표기로 이해된다.

현재 稼宮은 조선 시대 宮房의 직명에서만 발견된다. 조선 시대 宮房의 직무명으로 稼公이 흔히 사용되어 公이 宮으로 바뀌어 표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稼宮의 宮은 ‘궁방’과는 관련이 없는 음가자 표기이다. 숙궁(稼公)이 궁방의 직무에서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公’을 ‘宮’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 나타난 稼의 의미 분석

앞 절에서 稼宮의 稼가 본래는 ‘수’로 읽혔다는 것을 밝혔다. 이 절에서는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 나타난 稼의 용례를 검토하여 稼의 의미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稼宮, 稼奴 등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 『한국한자어사전』에는 稼庫, 稼倉, 稼宮, 稼奴, 稼尺, 稼館 등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稼庫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朝鮮王朝實錄』의 용례를 주로 이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다른 문헌 자료의 것을 활용하도록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는 정확한 사용 시기를 보여 주므로 稼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20) a. 임금이 조정에 명하여 감산에 사는 康吉·雲尙 등 各戶를 刷出하여 深遠한 여러 州에 옮겨 두게 하고, 그 農作의 소출은 稂庫의 쌀로써 서로 바꾸어서 주게 하였다⁵³⁾ <太宗實錄 1418년(태종 18) 2월 20일>
- b. 지난번에 慶尙道 蔚山郡의 庫子 佛生·甫見 등 10명이 맡고 있는 稂庫의 곡식을 도둑질한 것에 연좌되었는데⁵⁴⁾ <成宗實錄 1476년(성종 7) 6월 12일>
- c. 靈泉館이 (중략) 이미 있는 館舍는 다시 지을 것이 없고, 새로 지어야 할 것은 단지 稂庫·官廳·公廡뿐이어서, 옮겨 설치하기 편리함이 이릅니다⁵⁵⁾ <中宗實錄 1525년(중종 20) 9월 28일>
- d. 강의 서쪽 언덕에 한 절이 있었는데, 누각이 높으면서 즐비했다. 물으니 즉 楡岾寺 稂庫라 한다. 세조께서 창건한 것이다 봄과 가을로 비쌀 때에 쌀을 사들이고 가격이 쌀 때에 쌀을 팔아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비용으로 삼는다.⁵⁶⁾ <再思堂先生逸集卷之一 雜著 遊金剛錄>

(20a)의 稂庫는 이 稂庫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용어임을 알려 주고 있다. (20b)는 稂庫에 ‘곡식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20c)는 稂庫가 건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결국 稂庫가 ‘곡식 창고’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0d)는 稂庫가 ‘임금’과 관계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0)의 용례를 통해서 볼 때, 稂는 ‘곡식’의 의미를 가진다.

稂倉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1) a. 본부 각 창고의 支用[官司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지출]으로 軍糧을 꾸어 준 것이 매년 1천 2백여 석이 되는데 稂倉에서 또 8백여 석을 꾸어 간 것이 있다.⁵⁷⁾ <正祖實錄 1796년(정조 20) 1월 11일>
- b. 서명웅이 말하기를, “稂倉을 설립한 뜻은 대개 戶曹·賑恤廳·常平廳의 例와 같습니다. 모든 祭享의 비용과 進興의 비용과 仁부·刷馬의 값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잡곡이 모두 4천여 석입니다”⁵⁸⁾ <正祖實錄, 1779년(정조 3) 8월 7일>

(21a)는 稂倉이 일반적 창고와는 다른 목적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 (21b)는 稂倉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祭享과 進興의 비용으로 쓰일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임을 말하고 있다. 祭享이란 조선 왕조의 열성조를 제향하기 위한 것이므로 稂倉이란 ‘임금’이 특별 관리하는 창고라 하겠다.

53) 『太宗實錄』 1418년(태종 18) 2월 20일, “上命定刷出甲山住康吉 雲尙等各戶 移置深遠諸州 其農作所出 以稂庫之米相換以給

54) 『成宗實錄』 1476년(성종 7) 6월 12일, “頃者慶尙道蔚山郡庫子佛生、甫見等十名, 坐盜稂庫之穀”

55) 『中宗實錄』 1525년(중종 20) 9월 28일, “已有館舍, 不可更構, 所可營造者 只稂庫 官廳 公衙而已 移設之利如此”

56) 『再思堂先生逸集』 卷之一 雜著 遊金剛錄, “江之西岸有一寺 樓觀峻峻 倉庫豐隆 問之則乃楡岾寺稂庫也 我世祖所建 春秋斂散 以爲朝夕奉佛之資”

57) 『正祖實錄』 1796년(정조 20) 1월 11일, “本府各庫支用之以軍餉貸下者, 每年一千二百餘石, 稂倉又有八百餘石貸去者”

58) 『正祖實錄』, 1779년(정조 3) 8월 7일, “命膺曰 稂倉設立之意 蓋如戶曹 賑恤廳 常平廳之例 凡諸祭享之需 賑恤之資 夫刷之價 皆出於此 而雜穀 合爲四千餘石”

稂庫와 稂倉의 용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단순히 ‘곡식 창고’를 의미하던 稂庫와 稂倉에 ‘임금’의 의미가 첨가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稂宮과 稂奴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특별한 문맥에서의 용례만 발견된다.⁵⁹⁾ 연대가 이른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 a. 明禮宮의 稂宮 趙德壽를 司鑰에 제수하다.⁶⁰⁾ 〈承政院日記 1779년(정조 3) 2월 12일〉
 b. 그때 臨海君房의 稂奴로 이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⁶¹⁾ 〈宣祖實錄 1593년(선조 26) 8월 13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明禮宮이나 臨海君房과 같이 궁방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할 때에만 稂宮과 稂奴가 출현한다. 앞에서 稂宮은 본래 稂公으로 궁방의 회계 책임자 곧 ‘곡물을 관리하는 아전’의 의미임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稂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궁방에 딸린 종’으로 풀이하였으나 稂宮을 고려할 때, 稂奴는 稂宮 휘하의 종으로 생각된다.

稂館의 용례는 『東國文獻備考』에서 발견되는 용례인데,⁶²⁾ 『大東地志』의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 (23) 신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다시 옛 창고터에 다시 창고를 설치하였다. 또 樞山の 동쪽 제방에 館을 설치하여 곡식을 많이 저축하였다. 백성들은 稂館이라 불렀다. 무릇 당나라에서 오는 사신과 장사치들은 모두 館에 묵게 되었다.⁶³⁾ 〈大東地志 忠淸道 河川〉

(23)에서 창고와 館을 설치한 주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民呼爲稂館’으로 보아 중앙 정부가 그 주체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와 당나라의 교역을 위한 창고가 館이었으므로 설치의 주체는 중앙 정부였을 것이 틀림 없다. (23)에 제시된 稂의 용례에 ‘정부’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稂尺은 『조선왕조실록』에 단 1회 나온다.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음이 그것이다.

- (24) 河永의 良賤에 대한 일을 너희들이 기한 내에 신청(申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나, 하영의 어미의 祖는 오랜 帳籍에 白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50년 이후부터 稂尺으로 시행되어 왔으니⁶⁴⁾ 〈太宗實錄 1411년(태종 11) 1월 3일〉

59) 稂宮은 『朝鮮王朝實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承政院日記』의 용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60) 『承政院日記』 1779년(정조 3) 2월 12일, “柳義養曰, 明禮宮稂宮, 趙德壽, 司鑰除授”

61) 『宣祖實錄』 1593년(선조 26) 8월 13일, “其時臨海君房稂奴稱名人亦往”

62) 동일한 내용이 『林下筆記』, 『增補文獻備考』, 『東國文獻備考』 關防 海路 三 西海亭館 등에도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東國文獻備考』이다. 『東國文獻備考』는 1770년(영조 46)에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내용에 오류가 많아 18세기 말에 개수 작업을 거쳐 19세기 말에 『增補文獻備考』로 개수된다.

63) 『大東地志』 忠淸道 河川, “新羅平百濟 復置倉於古址 又置館於樞山之東堰 多積穀 民呼爲稂館 凡唐舶之使價商賈皆就館”

64) 『太宗實錄』 1411년(태종 11) 1월 3일, “河永良賤事, 汝等謂以限內未呈, 不當受理, 然永母之祖, 於久遠帳籍, 以白丁施行, 五十年以後, 乃以稂尺施行, 則不無疑慮也 宜更辨正”

(24)의 稜尺을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서 稜奴와 같은 뜻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稜尺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23)에서 稜尺의 전신은 白丁이라 하였으므로 稜尺은 흔히 ‘禾尺, 水尺’의 이표기로 ‘양수척’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稜는 차자 표기로 쓰인 것으로 稜가 ‘슈’ 또는 ‘쉬’로 읽히는 것을 알려 주는 자료라 하겠다.

稜이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5) a. 大稜⁶⁵⁾ 3間, 三寶稜 2間 〈白巖寺傳帳受〉
- b. 天順元年 戊寅 八月 日來 二月爲始 所用米糧 附近各官稜 上米五千石 〈靑莊館全書 蟲葉記 海印寺藏經〉

(25a)의 「白巖寺傳帳受」 백양사 소장의 자료로 김문경(2007)에 따르면 1393년(태조 2)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후행한 ‘間’으로 보아 (25a)의 稜이 ‘창고’의 의미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창고가 ‘곡식 창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5b)는 조선 세조 시 해인사 대장경 인출에 관한 전말을 기록한 『擲印節目』에 출현한 稜의 용례이다.⁶⁶⁾ (25)는 해인사 대장경의 인출 작업이 天順 元年 즉 1457년(세조 3)에 시작되었고, 인출 시의 비용으로 부근 官稜에서 쌀 오천석을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5b)의 官稜은 ‘관아의 곡식 창고’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稜의 용례를 통하여 稜에 ‘정부(임금, 궁방), 곡식, 창고’ 등의 의미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의미는 稜의 사용 문맥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이해하였다. 즉 稜庫가 임금이 직접 관할하는 창고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稜宮이 궁방의 직명어로서 사용된 것에 기인하여 稜에 ‘정부(임금, 궁방)’ 등의 의미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4) 稜의 기원적 의미와 자형 구성 방법

稜가 ‘곡식’과 ‘창고’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에 착안하여 鮎貝房之進(1931)은 稜를 회의자로 규정하였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稜에 관련하여 鄭東愈가 『晝永篇』에서 ‘倉庫稱稜(音수)라 한 것에서 ‘수’가 정말 稜의 字音인지의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 『晝永篇』에서 稜의 음으로 ‘수’로 제시한 것이 稜의 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동유가 『晝永篇』에서 우리말 ‘탈’을 표시하는 頃의 음을 ‘탈’로 제시했는데, ‘탈’은 頃의 자음이 아니고 訓이기 때문이다.

稜와 관련된 ‘수’가 字音이 아니고 訓인 증거를 다음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 (26) a. 安山郡 修理山의 稜巖이 무너졌는데, 길이가 30척, 너비가 25척이었다.⁶⁷⁾ 〈太宗實錄 1408

65) 김문경(2007: 89)에 따르면, 「白巖寺傳帳受」의 작성 연대는 1393년(태조 2)이며, 이 문서에는 白羊寺 가람의 건물 내역이 기술되어 있다. 또 김문경 씨에 따르면, 「白巖寺傳帳受」는 현재 백양사에 소장되어 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66) 『擲印節目』은 현재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蟲葉記」의 海印寺藏經 조에 전한다.
 67) 『太宗實錄』 1408년(태종 8) 12월 5일, “安山郡修理山稜巖頽 長三十尺 廣二十五尺”

년(태종 8) 12월 5일)

- b. 鎮山은 鷲岩이다 [군의 동쪽에 있으니] 〈世宗實錄地理志 安山〉, 鷲巖 수리산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安山郡 山川〉
- c. 修理山은 동쪽 5리에 있다. 太乙山이라기도 하고 見佛山이라기도 한다. 자못 가파르고 높은 곳에 鷲岩峯이 있다. 방언에 鷲를 수리(修理)라 한다. ⁶⁸⁾〈大東地志 安山 沿革〉
- d. 秀岩峰 〈朝鮮地誌資料 安山 郡內面〉

(26a)에서 말한 稂巖은 (26b)와 (26c)에서는 鷲巖(수리바위)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26d)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秀岩(수암)으로 그 표기가 바뀌었다. (26c)의 ‘방언에 鷲를 수리(修理)라 한다’는 기술은 鷲岩의 鷲가 훈차 표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곧 鷲岩이 ‘수리바위’ 정도를 표기한 것임을 알려 준다. 한편 (26d)의 秀岩은 鷲岩을 음차 표기로 읽고 이에 따라 한자를 바꾼 표기이다.

(26)에서 鷲岩과 稂巖의 대응은 조선 후기에 稂가 ‘수’ 정도로 읽혔으나 15세기에는 ‘쉬’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稂巖의 稂가 ‘수’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鷲岩과 稂巖의 대응 관계를 성립 시킬 수 없다. 즉 ‘수리’와 ‘수’는 음운론적으로 대응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稂가 ‘쉬’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수리’와 ‘쉬’는 음운론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수리’와 ‘쉬’의 대응에서 ‘쉬’는 ‘수리’에서 ‘르’이 탈락한 것인데, 이와 같이 모음과 l 모음사이의 ‘르’가 탈락하는 경우는 15세기어에서 발견된다. 즉 유창돈(1973: 91-92)은 15세기어에서 ‘나리[ㄴ] 대 내, 누리[ㄴ] 대 뉘, 도리[ㄴ] 대 되’ 등의 공존형을 소개하고 있다.

稂가 기원적으로 ‘수’가 아니라 ‘쉬’에 관계된다는 사실은 稂의 기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즉 『訓蒙字會』 下:3에서 禾의 훈과 음을 ‘쉬 화’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면, 稂가 가진 ‘곡식’과 ‘창고’의 두 의미 중에서 ‘창고’보다는 ‘곡식’을 稂의 기원적인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稂의 기원적인 의미를 ‘창고’로 볼 경우 ‘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鮎貝房之進(1931)처럼 稂를 회의자로 보아 稂의 기원적인 의미를 ‘곡식 창고’로 볼 경우에도 稂와 ‘쉬’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稂의 기원적인 의미를 ‘곡식’으로 볼 경우에 장점이 있다. 즉 「行用吏文」에서 稂宮을 ‘쉬궁’으로 제시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稂宮의 稂를 ‘곡식 창고’로 볼 경우, 稂宮을 ‘곡식의 출납을 관리하는 아전’의 뜻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창고’의 의미가 이러한 해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稂宮의 의미는 稂를 단순히 ‘곡식’의 뜻으로만 이해할 경우에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稂의 기원적 의미가 ‘곡식’이라면 稂은 ‘창고’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 (27) a. 禾倉 在禾回坊(今屬監營) 〈輿地圖書 黃海道 瑞興〉
- b. 穀食樓 5間 〈修禪社形止案⁶⁹⁾〉
- c. 大口 땅에 왜적 10여 명이 밤을 타고 돌격하여 들어와서 먼저 죄인을 가둔 토우(土宇)를 부

68) 『大東地志』 安山 沿革, “修理山 東五里 一云太乙山 一云見佛山 頗峻高有鷲岩峯 方言謂鷲爲修理”

69) 노명호 외(2000: 373)에 따르면 「修禪社形止案」은 1221년부터 122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고 난 다음 穀倉에 불을 지르고⁷⁰⁾ 〈宣祖實錄 1598년(선조 31) 2월 23일〉

(27a)의 禾倉, (27b)의 穀倉樓梗樓梗은 樓 형식의 倉, (27c)의 穀倉 등은 모두 ‘곡식+창고’ 등의 형식을 가진 말로 모두 ‘곡식 창고’의 뜻을 가진다. 특히 禾倉은 한국 고유한자 稂의 자형 형성을 증거하는 자료이다. 즉 禾倉에서 禾는 본래 ‘곡식’의 뜻만 가졌으나 후행한 倉의 의미를 흡수하여 ‘창고’의 의미까지 가지게 되고,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 禾에 창고의 뜻인 ‘京’을 첨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衣對에서 對가 衣의 의미를 흡수하여 한국 고유한자 襪의 자형을 형성한 것과 동귀의 것이다. 결국 稂은 형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이해되는데, 意符인 京을 첨가하는 방식이 襪와는 다른 점이 특색이다. 意符인 京이 한자의 部首가 아닌 점도 특색이다.

IV. 결 언

이 글은 중국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고유한자가 함유한 자형 형성의 고유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자형 형성의 고유성을 밝히게 되면, 한국 고유한자에 투영된 우리말 어형을 복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李暉光 『芝峯類說』의 文字部, 黃胤錫의 『頤齋亂稿』,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蟲葉記」 등에서 한국 고유한자 자형 형성 과정을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 한국 고유한자 樑가 우리말 ‘뿔’ 또는 ‘보’를 차자 표기한 保에 意符 ‘木’을 추가하여 구성된 글자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鮎貝房之進(1931)이 제안한 한국 고유한자의 자형 구성 방법을 소개하고, 鮎貝房之進(1931)이 樑의 의미를 ‘사다리’로 파악한 것은 오류임을 밝히고 이를 자긋밥으로 풀이해야 바른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영훈(1980)을 활용하여 남풍현(1989)에서 미진하게 논의했던 한국 고유한자 矣의 의미인 ‘統首’의 의미 형성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형성에 의해 구성된 한국 고유한자의 새로운 사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활용하여 한국 고유한자 ‘襪, 襪, 襪’ 등이 형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고유한자 稂가 형성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새로이 밝혔다. 襪의 경우에는 우리말 ‘비비-’를 차자 표기한 飛襪에서 襪에 있는 衣에 영향을 받아 襪의 자형이 형성되었음을 논의하였다. 襪의 경우에는 우리말 ‘누비-’를 차자 표기한 縷飛에서 縷에 있는 糸에 영향을 받아 襪의 자형이 형성되었음을 논의하였다. 襪의 경우에는 衣對의 한자 표기에서 衣에 영향을 받아 襪의 자형이 형성되었음을 논의하였다. 稂의 경우에는 우선 樑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 즉 ‘정부, 곡식, 창고’ 등에서 ‘곡식’이 기원적인 의미이며, 문맥적 환경에 의해 ‘곡식’의 의미에 ‘정부, 창고’ 등의 의미가 첨가

70) 『宣祖實錄』 1598년(선조 31) 2월 23일, “大口之地, 倭賊十餘名, 乘夜突入, 先破囚人土宇, 次焚穀倉”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稼가 형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새로이 논의하였다. 즉 禾倉과 같은 결합 경험에서 후행한 倉창고에 영향 받아 禾에 京창고의 意符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글자로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1. 資料

- 『康熙字典』(<http://tool.httpcn.com/KangXi>)
- 『高麗史』, 아세아문화사, 1972.
- 『救急簡易方(동양학총서 제9집)』,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82.
- 『重訂南漢志』(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大東地志』(金正浩, 국립중앙도서관, 古貴0235-2)
- 『(校訂)大明律直解』(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국립중앙도서관)
- 『老朴集覽』(동국대학교, 貴D494.2노13)
- 「大安寺形止案」(盧明鎬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 『萬機要覽』(徐榮輔,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牧民心書』(丁若鏞,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翻譯老乞大』(대제각, 1985)
- 『翻譯朴通事』(대제각, 1985)
- 『法華經諺解』(대제각, 1985)
- 『三國史記』(대제각, 1987)
- 『釋譜詳節』(대제각, 1985)
- 『星湖僊說類選』(李瀛,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修禪社形止案」(盧明鎬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 『新字典』(朝鮮光文會, 1915)
- 『新增東國輿地勝覽』(景文社 1978)
- 『御營廳謄錄』(장서각 K2-3349)
- 『輿地圖書』(大韓民國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 1973)
-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譯註高麗史』(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東亞大學校出版社, 1966)
- 『頤齋亂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頤齋遺稿』(黃胤錫,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史學指南』(徐元瑞 纂, 국립중앙도서관, 古6026-3)
 『日省錄』(서울대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字典釋要』(池錫永, 1909)
 『載寧啓下節目』(『고문서』 14, 奎 18288의23, 서울대 규장각)
 『再思堂先生逸集』(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典律通補』(具允明 編, 국립중앙도서관, 古6022-11)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朝鮮地誌資料』(국립중앙도서관, 古2703-1-1-7)
 『晝永編』(鄭東愈, 국립중앙도서관, 古091-7)
 『芝峯類說』(李晬光,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震覽』(서울대 규장각, 가람古903 J563)
 『昌陵位田畝量案』(장서각, K2-3245)
 『靑莊館全書』 「齒葉記」(李德懋,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太祖家屋許與文記」(盧明鎬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訓蒙字會』(단대출판부, 1983년 재판 영인본)

2. 논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韓國木簡字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국립중앙박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 2009.
 김문경, 「朝鮮後期 白羊寺의 僧役에 대한 고찰」, 『禪文化研究』 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7, 81~110쪽.
 金鍾埴, 『韓國固有漢字研究』, 集文堂, 1983.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1981.
 南豐鉉,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96~109쪽.
 南豐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盧明鎬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7.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9~2008.
 도수희, 『한국의 지명』, 아카넷, 2003.
 稻葉岩吉, 『釋掠』, 大阪屋號書店, 京城, 昭和 11.
 柳在泳, 「韓國漢字」, 『국어국문학』 3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朴盛鍾, 「韓國漢字의 一考察」, 『口訣研究』 14, 2005, 51~82쪽.

- 박혜범, 『동리산 사문비보』, 박이정, 2009.
- 신상현, 『조선시대 한자 자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유창돈, 『李朝國語史研究』, 선명문화사, 1973.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의 발달-지명의 후부 요소 표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2009ㄱ,
219~259쪽.
- 이건식, 「조선 전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어류명 표기에 대한 연구」,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9ㄴ,
125~172쪽.
- 이기문,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백산학회, 1968, 101~142쪽.
- 李基文, 『國語史概說 改訂版』, 탑출판사, 1980.
- 李丞宰, 『高麗時代의 史讀』, 태학사, 1992.
- 이영훈,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29, 1980, 75~137쪽.
- 李忠九, 「晝永編에 蒐集된 韓國漢字의 分析研究」, 『首善論集』 8,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學生會, 1983.
- 鮎貝房之進, 『俗字攷』, 雜攷, 東京 圖書刊行會, 1931.
- 諸橋轍次, 『大漢和大辭典』, 昭和 六十年.
- 최동언, 『조선식한문연구』, 북한 사회과학원, 2001.
-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33, 1999, 185~224.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1993.
- 홍기문,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8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中文抄录】

韩国固有汉字字形構成方法研究 二題

- 对现有的研究进行批判而检讨, 并对形声而构成的韩国固有汉字举个例子 -

李 建 植*

本文强调只因为在中国字书或者韵书没记载而判断为韩国固有汉字会有错误的可能性。本人还提出应该客观证明韩国固有汉字包含的字形構成的固有性。本文强调如果能够证明字形構成的固有性, 还会复原投影在韩国固有汉字的韩国语语形。

第二章, 对韩国固有汉字字形構成方法进行批判而检讨得到如下的结论。第一, 韩国固有汉字‘椶’是标记韩国语‘봉’和‘보’的借字‘保’加上意符‘木’而造成的。第二, 指出‘櫪’的意思不是‘梯子’而是‘铙花儿’。第三, 本人应用李永薰(1980)和南豊鉉(1989)的意见而记述韩国固有汉字‘矣’通过什么样的过程而具有統首的意思。

第三章记述了通过形声的方法来构成的韩国固有汉字的新的例子。捉摸现有的研究而确认韩国固有汉字‘襍, 纒, 襪’等字是用形声的方法而成的。还指出‘稂’也是用形声的方法而造成的固有汉字。‘稂’表示‘政府、谷物、仓库’这些三种意思, 本人指出其起源的意思是谷物, 还指出‘稂’字是形声字, 它受‘禾+倉’的结构影响, ‘禾’加上意符‘京[仓库]’而构成‘稂’字。

【主题语】 韩国固有汉字、椶、櫪、矣、襍、纒、襪、稂

* 檀國大學校 教授